

#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420
----------	-----

2019년 4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 2019년 2월 1일
- 다. 회부일 : 2019년 2월 7일
- 라. 상정일 : 제28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4월 26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정운 감사위원장)

### 가. 제안이유

-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 사회각계가 참여·협약하는 민관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청렴문화 및 주민참여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5조).
- 청렴사회 민관실무협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10호)
-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 다. 입법예고(2018.11.8. ~ 11.28.) 결과: 의견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가. 입법 취지 및 배경

-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간협의회 (이하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임.
- 본 조례안은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의회 기능(안 제2조, 반부패정책의 주민참여 활성화, 협약체결, 주민의견수렴, 교육·홍보), 구성(안 제3조, 공동의장:시장·민간위원, 30명의 위원), 회의의 소집 및 의결(안 제5조), 실무협의회(안 제6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안 제7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간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조항	주요내용
제1조(목적)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민관협력체계 구축
제2조(협의회 설치·기능)	부패방지 주민참여 협약, 평가, 의견수렴, 홍보
제3조(구성)	의장2명(공공, 민간), 위원30명
제4조(의장의 직무)	공동의장은 각 부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함
제5조(회의)	시장이 회의 소집, 민간의장이 회의 주재
제6조(실무협의회 설치·운영)	30인, 안전의 사전검토 및 위임사항 처리
제7조(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	협의회 및 민간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 가능
제8조(수당)	수당, 여비, 경비를 지급 가능(공무원 제외)
제9조(운영세칙)	공동의장의 협의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정부가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 따라 민간이 참여하는 청렴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령, 2018.1.3. 제정, 이하 ‘협의회 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조례 제정을 위한 표준안을 만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여부, 협의회 설치·운영 실적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지표로 설정하고 있어, 서울수도 민간이 참여하는 반부패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제정 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임.

- ※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의 요점 : 반부패정책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확산
-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를 2021~2022년 세계 20위권으로 높인다는 목표 수립
  - 4대 전략
    - 함께하는 청렴 : ① 국민과 함께하는 반부패 협력기반 마련, ② 반부패 관계기구를 강화
    - 깨끗한 공직사회: ③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 ④ 「청탁금지법」 등 강화된 청렴기준을 정착, ⑤ 공직자의 사적 이해충돌방지 체계를 구축, ⑥ 공공분야 ‘갑질’ 관행을 개선, ⑦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지속 엄단, ⑧ 민관 유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 투명한 경영환경 : ⑨ 기업의 준법경영시스템을 내실화, ⑩ 기업의 반부패경영을 지원하고 책임성을 강화, ⑪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향상
    - 실천하는 청렴 : ⑫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제고, 부패공익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는 두텁게 보호, ⑭ 참여와 협력으로 안전 분야 부패를 제거, ⑮ 사회 각 분야 청렴 사회협약을 확산

〈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 배포 공문 〉



## 국민권익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역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표준 조례안’ 배포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위원회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18. 1. 3.) 제9조에 근거하여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불임과 같이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였는바 해당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책평가 지표 〉

평가 부분	B. 실행	평가 영역	1.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2. 청렴 거버넌스 운영		배점 (실반영점수)	100 (10)							
평가 방법	③ 민관협의회 설치·운영(40)										
	가. 광역자치단체 해당 지표										
	-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지역 청렴사회 민관협회의 설치 여부 및 운영 실적을 평가										
	<table border="1"> <thead> <tr> <th align="center">구 분</th> <th align="center">배점</th> </tr> </thead> <tbody> <tr> <td>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td> <td align="center">20</td> </tr> <tr> <td>민관협의회 구성 및 위원 위촉</td> <td align="center">10</td> </tr> <tr> <td>청렴협약 체결</td> <td align="center">10</td> </tr> </tbody> </table>			구 분	배점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20	민관협의회 구성 및 위원 위촉	10	청렴협약 체결	10
구 분	배점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20										
민관협의회 구성 및 위원 위촉	10										
청렴협약 체결	10										

나. 기초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해당 지표 (세부내용 생략)

○ 민·관 협력 활동 실적(가점, 10)

가.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표 (세부내용 생략)

나. 평가 대상기관 전체 해당 지표 (세부내용 생략)

-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운영 실적 (세부내용 생략)
-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실적 (세부내용 생략)
- 민·관 협력 활동 실적 (세부내용 생략)

- 다만, 서울시는 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 수립, 정책의 감시·평가·환류를 통한 제도개선, 시민의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렴정책자문위원회’(근거 조례 :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여 왔는바,

〈 청렴정책자문위원회 〉

- 구성 : 학계·연구계·언론계 등 민간전문가 15명 내외
- 출범 : 2016년 8월 24일(임기 2년, 1회 연임가능)
- 역할 : ① 반부패청렴정책 수립 시 시민의 입장에서 자문 및 정책제안, ② 반부패정책 전 과정의 모니터링·평가·환류 등 전 단계에서 개선방안 제시

본 제정안의 협의회와 청렴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상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신규 조례 제정 및 위원회 신설 대신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사유 〉

공직자의 청렴성 제고 및 청렴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청렴시정을 실현하고, 서울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간부청렴도 평가, 청렴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등 내·외부로 청렴활동의 근거를 확보하고자 제정되었음.

〈 청렴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사유 〉

청렴정책자문위원회는 민간전문가와 협업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청렴정책 수립, 집행, 평가 등에 자문 및 정책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렴정책자문위원회의 제안을 청렴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과의 청렴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구성 하였음.

〈 청렴정책자문위원회와 청렴사회 민간협의회 비교 〉

	청렴정책자문위원회	청렴사회 민간협의회(안)
근거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성	· 13명 이내의 비상근 위원 · 위원장1인, 부위원장 1인	· 30명 이내(비상설 위원회) · 공공부문 의장1인, 민간부문 의장1인
운영	연1회 정례회, 필요시 임시회	시장이 필요 시 회의 소집
기능	· 반부패청렴정책 수립 시 자문 및 제안 · 청렴정책 수립·집행·평가·환류 전 과정에서 자문 · 시민의 관점에서 자문 및 정책제안	· 부패방지 정책의 주민참여 활성화 · 청렴사회협약 체결·이행·평가 · 사회각계의 의견수렴 및 주민의견 수렴 · 윤리경영지원과 활성화 · 청렴실천운동 추진
임기	2년(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회의 개최시 소집, 회의종료시 자동 해산

## 나. 세부내용 검토

- 안 제2조는 협의회의 기능을 ‘주민의 부패방지 정책 참여, 사회각계(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와의 청렴사회 협약 체결 및 이행에 대한 평가, 주민의견 수렴, 윤리경영 지원, 교육·홍보·인식개선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위원회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수반되는 예산을 연간 5억원 미만으로 예상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협의회의 다양한 사업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제2조(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기능)**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부패방지 정책 참여 및 지역사회의 청렴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체결·이행 및 그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 사회각계의 제안 및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청렴 교육·홍보·인식개선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사회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또한, 감사위원회가 협의회의 실질적인 활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 기준에 맞춘 소극적인 운영을 계획하거나, 대외 평가용 조례를 제출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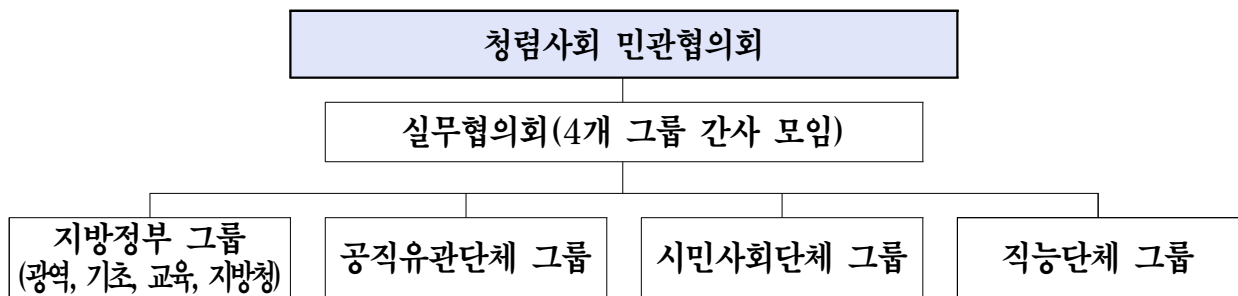
- 안 제3조제1항은 협의회의 위원을 30명 이내로 정하고, 회의 소집 시 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해산하도록 규정하여 비상설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임.

**제3조(구성) ① 민관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 구성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 감사위원회는 협의회를 비상설로 운영하려는 사유를 ‘비상설로 운영하여도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으면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민관협력담당관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감사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 기준에 따라 매년 2회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나, 본 조례안에는 회의 개최시기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협의회 위원의 전문성 및 시민참여 청렴정책의 연속성 등에 문제는 없는지, 비상설로 운영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있는지, 구성만 하고 형식적인 운영이 될 여지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 조례 제정 전에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청렴사회 민간협의회 조직 운영체계도 예시〉**



- 또한, 감사위원회는 협의회의 위원 중 공공부문은 23개 단체(79.3%), 민간부문은 6개 단체(20.7%)로 구성을 이미 완료(2018.11.22., 협약식 개최 및 협의회 구성)<sup>1)</sup>하여, 구성 시 마다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조례를 제정 전부터 위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과도한 공공부문의 참여는 민간 참여 반부패 정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며, 소수의 특정단체만이 참여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1) 별첨3.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간협의회 위원 구성 현황 참조

※ 청렴사회 민간협회의는 서울시 포함 총 50개(13개의 자치단체, 5개의 서울시 산하기관, 26개의 정부 유관단체, 6개의 민간단체)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나, 자치단체, 서울시 산하기관, 민간단체는 고정적으로 참석하며, 26개의 정부유관단체를 5개 분야로 세분하여 5개 기관을 고정 참석토록 하여 총 30개 기관이 협의회를 구성하였음. 공공부분의 과도한 비율, 참여하는 민간단체의 고정, 조례 제정전 협의회 위원의 확정은 청렴문화 확산이라는 목적을 퇴색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구성 현황 〉

	공공부분			민간부분
	행정기관	서울시 공직유관 단체	정부 공직 유관단체	국제기구, 시민단체
대상기관	13	5	26	6
	44(88.0%)			6(12.0%)
협의회 구성	13	5	5	6
	23(79.3%)			6(20.7%)
대상기관	서울특별시, 교육청, 강동구, 광진구, 도봉구, 성동구, 강남구, 관악구, 노원구, 송파구, 강서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홍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투명성기구,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한국 YMCA 전국연맹, (사)서울시여성단체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 안 제3조제2항은 위원을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계(시민사회, 경제계, 언론계, 학계, 공직유관단체 등)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 교육감, 협의회에 참여하는 자치구청장으로 정하고 있음.

제3조(구성) ②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당연직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 및 제4호의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장
2. 서울특별시교육감
3.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구청장
4. 사회각계를 대표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한다.
  - 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사람
  - 나. 경제계를 대표하는 사람
  - 다. 언론계·학계를 대표하는 사람
  - 라. 시 소재 공직유관단체의 장
  - 마.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지방자치법」<sup>2)</sup>에 따라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만 제정할 수 있고, 국가사무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으며,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협의회 규정」<sup>3)</sup>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규율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가 없어 본 조항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안 제3조제3항은 의장 중 민간부문은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중임에도 불구하고,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의 상임대표<sup>4)</sup>로 이미 선출하고 있어, 협의회 구성 및 의장선출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제3조(구성) ③ 민관협의회 의장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대표하여 각 1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맡되, 공공부문 의장은 시장이 되고, 민간부문 의장은 민간위원(위촉직 위원 중 제2항제4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호선한다.

〈 본 조례 및 협의회 구성 경위 〉

- 2018.1.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10호)
- 2018.4. 국민권익위원회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 2018.6. 지역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마련 요청
- 2018.10 규제심사 등 사전심사 의뢰
- 2018.11 입법예고(20일 간 시보 게재)
- 2018.11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해당 기관 협약식 개최(협의회 구성)
- 2018.12 조례규칙심의회

- 2)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3)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지역 청렴사회 민관협회의의 설치) 지역주민의 부패방지 정책 참여 및 지역사회의 청렴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역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다.
- 4) 별첨3.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간협의회 구성 참조

- 특히, 회의시마다 위원을 재구성(비상설협의회로 구성)토록 하여 위원의 임기를 정하지 않고 있는바, 동일 단체의 대표가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독점하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간협의회 위원 구성’ 현황 발췌 〉

구 분	법인·단체명	대표회의 위원		비고
		직 위	성 명	
공공부문	서울특별시	시 장	박 원 순	공공의장
( 중 략 )				
민간부문	홍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 * *	민간의장

- 안 제4조제2항은 공공부문의 의장인 시장이 불출석시 직무대행을 지명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민간부문의 의장이 회의를 주재하도록(안 제5조 제3항) 하고 있으며, 민간부문 의장의 불참 규정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있는바, 시장의 불출석을 당연시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며, 안 제4조제2항의 삭제 필요성이나 조문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제4조(의장의 직무) ② **공공부문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공부문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민간위원은 제외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안 제6조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사항의 사전검토, 위임사항의 처리, 협의회 운영지원 등으로 규정하고 협의회가 구성될 때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면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심의 전 실무협의회도 이미 구성을 완료하고 있어, 청렴사회를 위한 실무위원회의 구성이 합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제6조(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민관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민관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등 민관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실무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관협의회가 구성될 때 구성하고 민관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면 자동 해산한다.

〈 서울특별시 실무민간협의회 위원 구성 현황 〉

구 분	법인·단체명	실무협의회 위원		비고
		직 위	성 명	
공공부문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강 선 섭	공공의장
( 중 략 )				
민간부문	홍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사 무 처 장	* * *	민간의장

- 안 제7조는 시장이 시민단체의 청렴문화 확산 운동 지원에 대해 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여지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해 차별화를 두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의 수립 등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제7조(민관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민관협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sup>5)</sup>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감사위원회는 사전절차인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이행하지 않고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법령준수가 요구될 뿐 아니라 본 조례의 제정은 관련 사전 절차 이행 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지방재정법」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 안 제8조는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 출석한 위원(관련 공무원 제외)에게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나, 협의회 운영과 기능수행을 위한 예산편성 여부 및 제도화된 협의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8조(수당 등) 민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실무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결론적으로 정부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 따라 서울 시도 협의회를 설치하여 청렴시책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청렴시책은 마땅히 추진해야 할 사안이나, 청렴사회를 위한 민간 협력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추진해야 하는 것이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평가를 통해 강압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지방분권의 시류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감사위원회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지 않고, 회의 소집시마다 동일 위원을 재구성토록하는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바, 감사위원회의 법령 준수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시책평가를 위해 실효성 없는 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청렴도 향상과 반부패 정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의회 구성단계에서부터 감사위원회의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 **7. 수정안의요지**

가. 수정이유

- 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상설화와 그에 따른 제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관협의회를 상설화 함(안 제3조).
-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위원 중 연장자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안 제4조 제2항).
- 민관협의회 상설화에 따라 위원 임기와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안 제5조 및 제6조), 조문체계를 정비함(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 민관협의회 상설화에 따라 실무협의회도 상설화하고(안 제8조 제2항), 실무협의회의 위촉위원의 임기와 해촉사유를 정함(안 제8조제5항).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재석위원 11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420
----------	-----------

제안연월일 : 2019년 4월 30일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 1. 수정이유

- 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상설화와 그에 따른 제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민관협의회를 상설화 함(안 제3조).
-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위원 중 연장자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안 제4조 제2항).
- 민관협의회 상설화에 따라 위원의 임기와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안 제5조 및 제6조), 조문체계를 정비함(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 민관협의회 상설화에 따라 실무협의회도 상설화하고(안 제8조 제2항), 실무협회의 위촉위원의 임기와 해촉사유를 정함(안 제8조제5항).

#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구성하되, 시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  
집하고자 할 때 구성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를 “구  
성한다”로 한다.

안 제4조제2항 중 “공공부문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민간위원은  
제외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위촉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  
5조와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7조제1항(안 제5조제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그 지위를 잃을 경우 위원직을 잃으며, 그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단,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지위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지위를 잃

을 경우 위원직을 잃으며, 그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이어받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위촉직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회의) ① 민관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공공부문 의장과 민간부문 의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8조제2항(안 제6조제2항) 중 “구성하되, 민관협의회가 구성될 때 구성하고 민관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면 자동 해산한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제8조제5항(안 제6조제5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제5조”를 “제7조”로 하며, 제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공공부문 실무의장을 제외한 실무협의회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한다.

제9조(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민관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신·구 조문대비표 >

제정안	수정안
<p>제3조(구성) ① 민관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하되, 시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 구성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u></p> <p>② ~ ④ (생략)</p> <p>제4조(의장의 직무) ① (생략)</p> <p>② 공공부문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u>공공부문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민간위원은 제외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제3조(구성) ① 민관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p> <p>② ~ ④ (제정안과 같음)</p> <p>제4조(의장의 직무) 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공공부문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u>위촉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lt; 신 설 &gt;</u></p>	<p>제5조(위원의 임기) ① <u>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그 지위를 잃을 경우 위원직을 잃으며, 그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u></p> <p>② <u>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단,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지위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지위를 잃을 경우 위원직을 잃으며, 그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이어받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③ 위촉직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신 설 >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회의) ① 시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관협의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7조(회의) ① 민관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공공부문 의장과 민간 부문 의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 ④ (제정안과 같음)

**제6조**(청렴사회 민관실무협회의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민관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민관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등 민관협회의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렴사회 민관실무협회의(이하 “실무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실무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관협의회가 구성될 때 구성하고 민관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면 자동 해산한다.

③ ~ ④ (생략)

< 신 설 >

⑤ 실무협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관협의회”와 “의장”은 각각 “실무협의회”와 “실무의장”으로 본다.

**제7조**(민관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민관협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청렴사회 민관실무협회의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민관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민관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등 민관협회의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렴사회 민관실무협회의(이하 “실무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실무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④ (제정안과 같음)

⑤ 공공부문 실무의장을 제외한 실무협의회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한다.

⑥ 실무협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관협의회”와 “의장”은 각각 “실무협의회”와 “실무의장”으로 본다.

**제9조**(민관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민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실무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민관협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 삭제 >

제10조(수당 등) 민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실무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민관협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청렴도를 향상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 사회각계가 참여·협약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기능)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부패방지 정책 참여 및 지역사회의 청렴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체결·이행 및 그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 사회각계의 제안 및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청렴 교육·홍보·인식개선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사회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민관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당연직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 및 제4호의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시장

2. 서울특별시교육감

3.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구청장

4. 사회각계를 대표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한다.

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사람

나. 경제계를 대표하는 사람

다. 언론계·학계를 대표하는 사람

라. 시 소재 공직유관단체의 장

마.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③ 민관협의회 의장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대표하여 각 1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맡되, 공공부문 의장은 시장이 되고, 민간부문 의장은 민간위원(위촉직 위원 중 제2항제4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호선한다.

④ 민관협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감사부서장(청렴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과장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민관협의회에서 각자 부문을 대표하고, 공동으로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공부문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그 지위를 잃을 경우 위원직을 잃으며, 그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

②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단,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지위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지위를 잃을 경우 위원직을 잃으며, 그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이어받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회의) ① 민관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공공부문 의장과 민간부문 의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민관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민관협의회 회의는 민간부문 의장이 주재한다.

④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한 주민 참여 제안 중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로 하여금 민관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민관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민관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등 민관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실무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은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당연직 실무위원(이하 “당연직 실무위원”이라 한다) 및 제4호의 위촉직 실무위원(이하

“위촉직 실무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시의 감사부서장

2. 시 교육청의 감사부서장

3.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감사부서장

4. 민간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사무총장,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중에서 민관협의회 위원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한다.

④ 실무협의회에는 공공부문 실무의장과 민간부문 실무의장을 두되, 공공부문 실무의장은 시의 감사부서장이 되고, 민간부문 실무의장은 민간실무위원(민간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사무총장,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위촉된 실무위원을 말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⑤ 공공부문 실무의장을 제외한 실무협의회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한다.

⑥ 실무협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관협의회”와 “의장”은 각각 “실무협의회”와 “실무의장”으로 본다.

제9조(민관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민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실무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민관협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